

1. 예산총칙

2026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962,404,960	28,872,149
일반회계	892,765,378	26,782,961
특별회계	69,639,582	2,089,187
기타특별회계	69,639,582	2,089,187
공무원아파트특별회계	11,084,395	332,532
중소기업및소상공인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	3,352,632	100,579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291,500	8,745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564,000	16,920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5,510,710	165,321
자활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914,001	27,42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701,690	21,051
상수도사업특별회계	4,427,696	132,831
수질개선특별회계	38,772,958	1,163,189
농업발전기금특별회계	4,020,000	120,600

제 2 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서"와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의 총액은 23,407,940천원이며,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8,377,940천원을 포함한다.

제 4 조 2026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34,5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